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2013. 3. 26.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목 차

I . 배경	1
II .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경과	2
III . 명백한 품명오류 과태료 부과 안내	3
① 적용시기	
② 과태료 부과 당사자	
③ 적용기준	
④ 명백한 품명오류 내역 예시	
⑤ 향후 과태료 부과 계획	
IV . B/L 추가 과태료 부과 안내	6
① 적용시기	
② 과태료 부과 당사자	
③ 적용기준	
④ 과태료 부과대상 예시	
⑤ 향후 과태료 부과 계획	
※ 참고자료	
1. 적하목록 관련 벌금 · 과태료 부과 요약	9
2. 수출입적하목록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10
3.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시행세칙 정리	13

※ 본 설명회 자료는 관세청 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배 경

-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이후, 업계의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정기간 유예
- 명백한 품명오류 '과태료 부과대상 전산조회시스템'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향후 과태료 부과 계획에 대한 사전 안내
- B/L 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 시행세칙을 대체할 지침이 시달되어 동 내용을 항공사 등 유관업체에 전파 및 의견 수렴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국내 무역관행의 국제규범화, 수출입물품의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

- 시행일 : 항공 수입화물 → '12.6.4 , 항공 수출화물 → '12.4.1
- 적하목록 제출시기

구분	수입	수출
항공 화물	○ (원칙) 항공기 입항 4시간前 ○ (근거리) 적재항 항공기 출항前 ○ (특송화물) 항공기 입항 1시간前	○ 항공기에 적재하기 前, 출항 30분前 최종 마감

- 수입적하목록은 원칙적으로 해외 출항지 포워드 전송체제로 전환
- 항공사는 수출입적하목록의 제출 의무자이며, 제출시기 위반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의 작성 책임자로서 수출적하목록 작성·정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 적하목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세관 위험관리와 직결되는 **명백한 품명 오류, B/L추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대상**

- 관련규정(상세내역 첨부자료 참조)
 -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1호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별표3
 - 과태료 부과대상 : B/L추가,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등

II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추진 경과

‘12.03.29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지침 시달

- ‘12.4.1부터 해상·항공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전면 시행
-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 벌금부과 유예

‘12.03.29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지침 시달

- ‘12.6.4부터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전면 시행
- 수입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 벌금부과 유예

‘12.07.02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시달

- ‘12.7.9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엄격 적용
 - 제도안정화 시기(‘12.4.1~‘12.6.30) 수출 B/L누락 건 정정신청 시 과태료 부과 면제

‘12.08.24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시달

- 수입 B/L 추가건 과태료 부과는 별도지침 시달 시까지 유예

‘12.09.07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준수 홍보 강화

- 시범운영기간(‘12.8.27~9.9) 종료에 따라 ‘12.9.10부터 엄격 적용
- B/L 추가·삭제, 명백한 품명오류의 정정주체는 항공사(특송업체)

‘12.09.28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관련 업무지침 시달

-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 벌금 부과 유예기간 연장
 - ‘12.12.1부터 적용 (종전지침 ‘12.10.1)
- 항공 수입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 벌금 부과 유예
 - B/L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 병행 시행 예정

‘12.11.26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시달

- ‘12.12.1부터 항공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시 벌금 부과
- ‘12.12.1부터 명백한 품명오류 과태료 부과

‘13.02.08 수출적하목록 처벌 관련 인천공항 간담회 결과

- 수출적하목록 B/L추가 과태료 부과 적용 시기는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와 불가분의 관계로 제출시기 위반 시 벌금 부과(‘12.12.1부터)와 동일 적용

‘13.02.19 명백한 품명오류 부과대상 조회시스템 구축

- ‘12.12.1 제출분부터 세관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부과대상 조회

‘13.02.20 항공 수입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기준 시달

- ‘13.4.1부터 B/L 추가 과태료 부과시 개선안 적용(적하목록 제출율 기준 도입)

Ⅲ 명백한 품명오류 과태료 부과 기준

1 적용시기

- ☐ '12.12.1부터 수출입 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기존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시범운영 실시('12.9.1~'12.11.30)
- ☐ 항공사의 항공수입적하목록에 한해 적용기준 중 ③광의어 및 ④상표는 '13.4.1부터 적용
 - 적용기준 중 ③광의어의 추가단어 '13.6.1 제출분부터 적용

2 과태료 부과 대상자

- ☐ 수입 : 항공사(S, C), 특송업체(X, D)
- ☐ 수출 : 항공사(S), 특송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C)

3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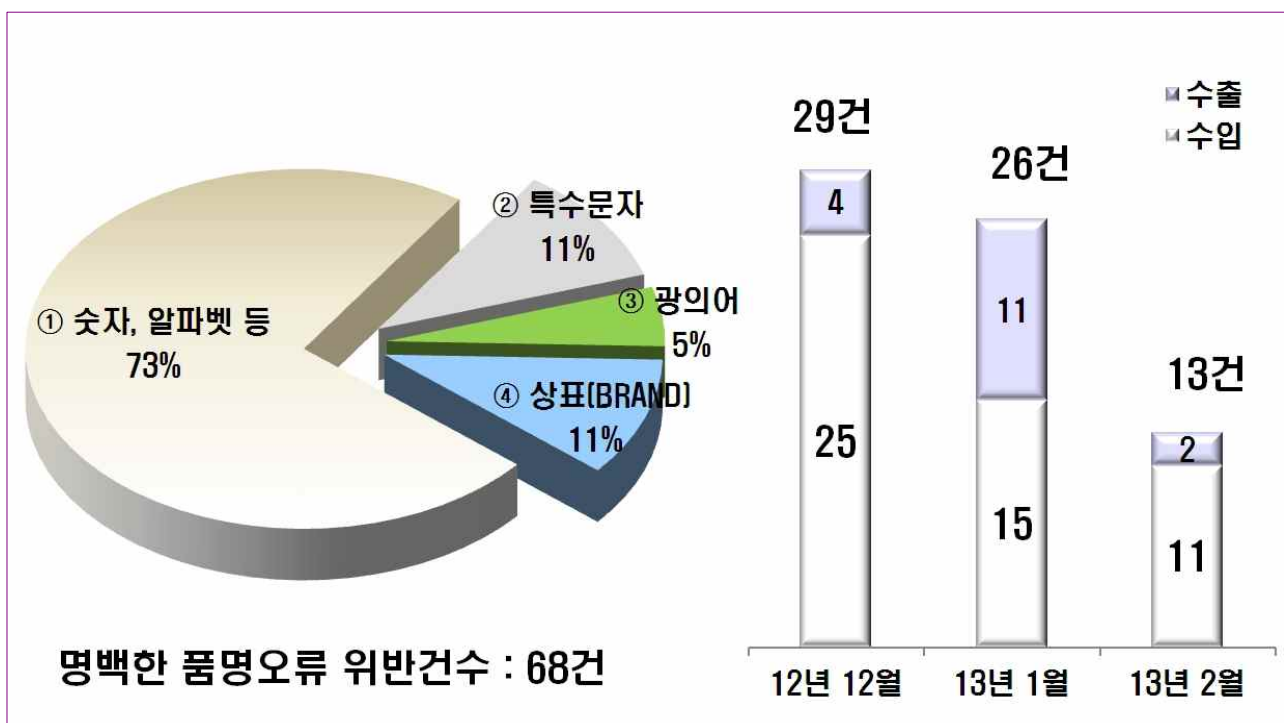
- ☐ 항공사, 포워더 및 특송업체가 작성·제출한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
 - 의미없는 단어간 조합, 모델규격, 단·복수 등은 모두 명백한 품명오류 해당 (예: SPARE PART, SAMPLE PART, PARTS, PART A 등)

적용기준	예시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 @, #, \$, %, &, *, ?, ^ 등
③ 광의어	Sample, Part, Assembly, Goods, Gift, Etc, Product
	(추가단어) Other, Whole, Unit, Type, Spare, Cargo, Merchandise, Material, Element
④ 상표(BRAND)	NIKE, ADIDAS, GUCCI, BURBERRY, CHANEL, LOUISVUITTON, PRADA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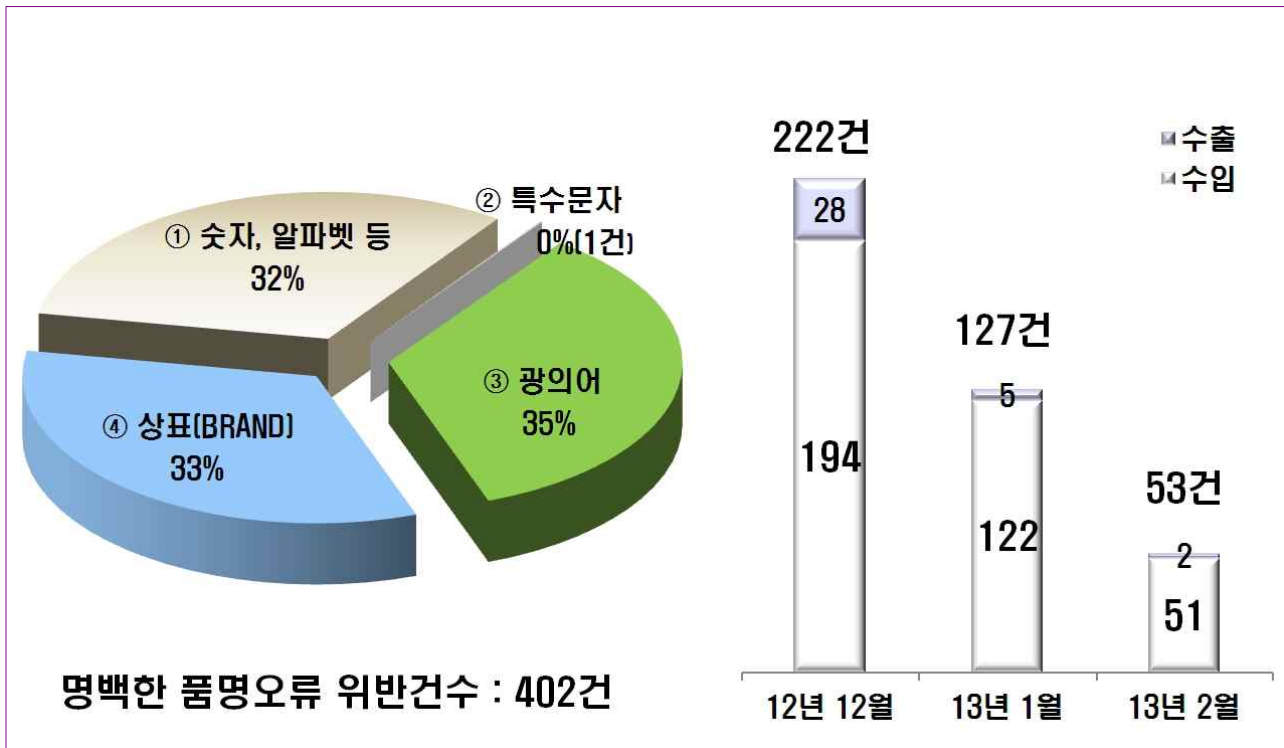
4 명백한 품명오류 내역 예시

구분	제출일자	정정일자	B/L구분	거래품명	판단기준
수입	'12.12.05	-	C	.	2
	'12.12.15	-	S	PW4000/KV	1
	'13.02.20	-	C	50011052	1
	'12.12.04	-	X	ABERCROMBIE	4
	'12.12.08	-	X	GIFTS	3
	'13.01.14	'13.01.15	C	X	1
	'13.02.10	'13.02.12	C	NON	1
수출	'12.12.04	-	C	PARTS	3
	'12.12.11	-	C	MOLEX	4
	'12.12.21	-	C	ZIMO	1
	'13.01.08	-	S	2PKG OF	1

□ 항공사 수출입 품명오류 현황 ('12.12.01 ~ '13.02.28)



□ 특송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 수출입 품명오류 현황 ('12.12.01 ~ '13.02.28)



5 향후 과태료 부과 계획

□ '12.12.1 ~ '13.1.31 품명오류 대상건 : 4월초 부과 예정

수입	3월말 : 과태료 대상 품명오류 리스트 업체 안내 및 감경자료 요청 4월초 : 감경 반영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수출	4월초 : 감경 반영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 '13.2.1 ~ '13.3.31 품명오류 대상건

- 수입 : 4월말 ~ 5월초 부과 예정
- 수출 : 분기별 부과 예정

□ 위반 건당 과태료 각각 부과 (수개의 고지서 일괄 발송)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

제6조(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세관장은 수개의 동일한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IV B/L 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과태료 부과 안내

1 적용시기

- ☐ 항공수입화물 : '13.4.1부터 적하목록 추가건에 과태료 부과
- ☐ 항공수출화물 : '12.12.1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와 연계하여 적용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 ☐ 수입 : 항공사(S, C), 특송업체(X, D)
- ☐ 수출 : 항공사(S), 특송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C)

3 적용기준

- ☐ 항공수입화물의 입항편별 적하목록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위반횟수 또는 위반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

적용대상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항공수입화물 (입항편별 적하목록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부과)	①	10만원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이하)	30만원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초과 100건이내)	50만원 (최근 1년간 MRN기준 100건초과)
	②	최근 1년간 MRN기준 2%이내 위반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이내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초과

- ①위반횟수 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 부과방식중 택일 가능

※ 항공 수입화물의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에 대한 과태료는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 개선안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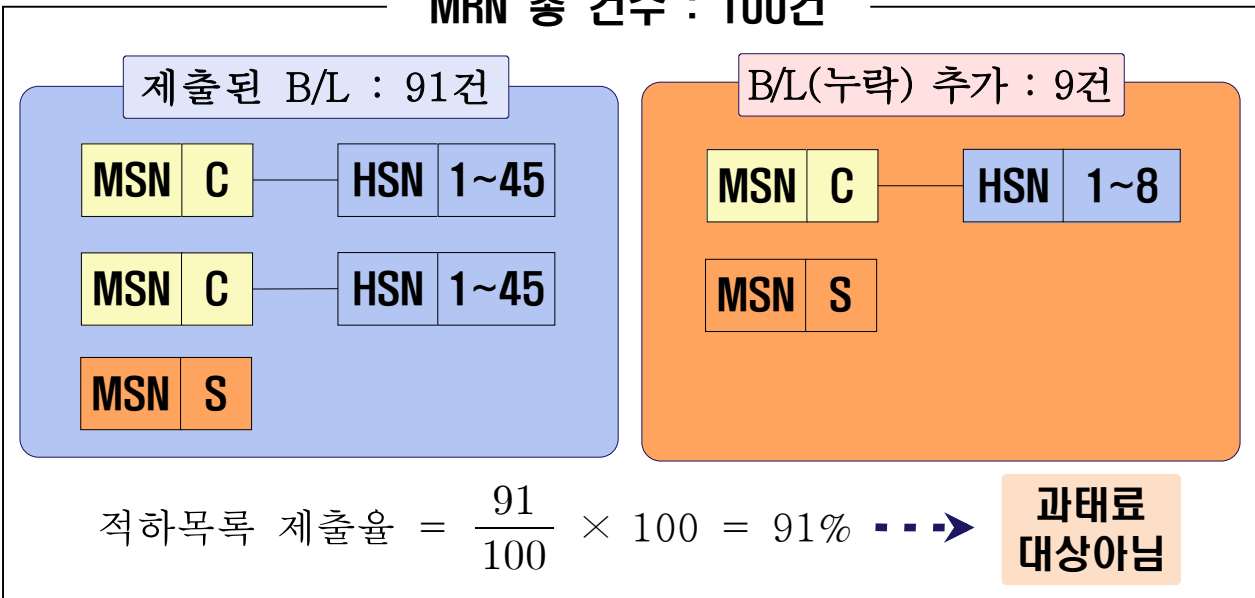
4 과태료 부과 대상 예시

$$\text{적하목록 제출율(MRN기준)} = \frac{\text{제출된 B/L}}{\text{제출된 B/L} + \text{누락된 B/L}} \times 100$$

* 총 적하목록(B/L) 건수 대비 누락건에 대한 정정신청(적하 추가)건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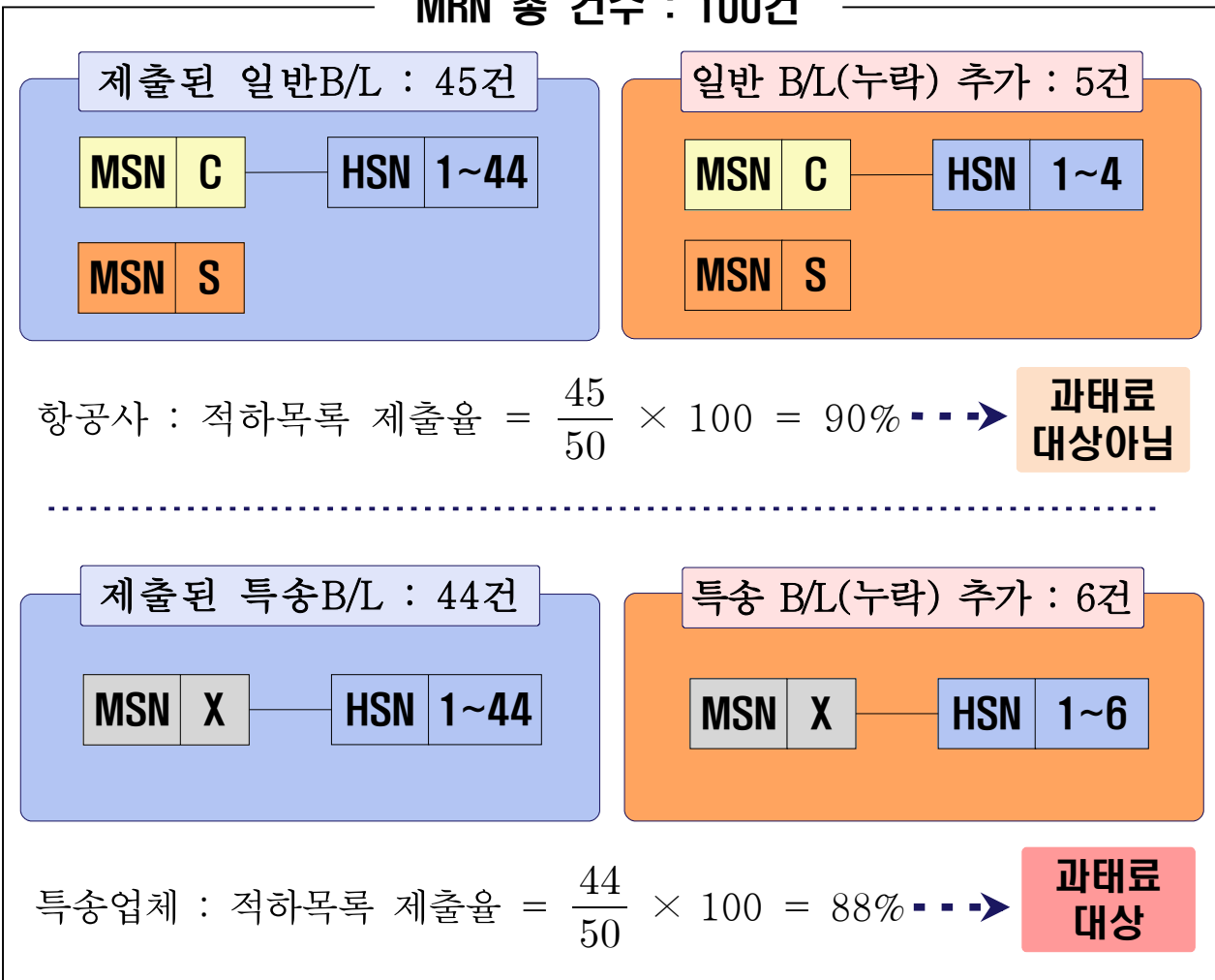
□ 일반화물만(S, C) 있는 경우

MRN 총 건수 : 100건



□ 일반화물(S, C) + 특송화물(X) 혼재된 경우

MRN 총 건수 : 1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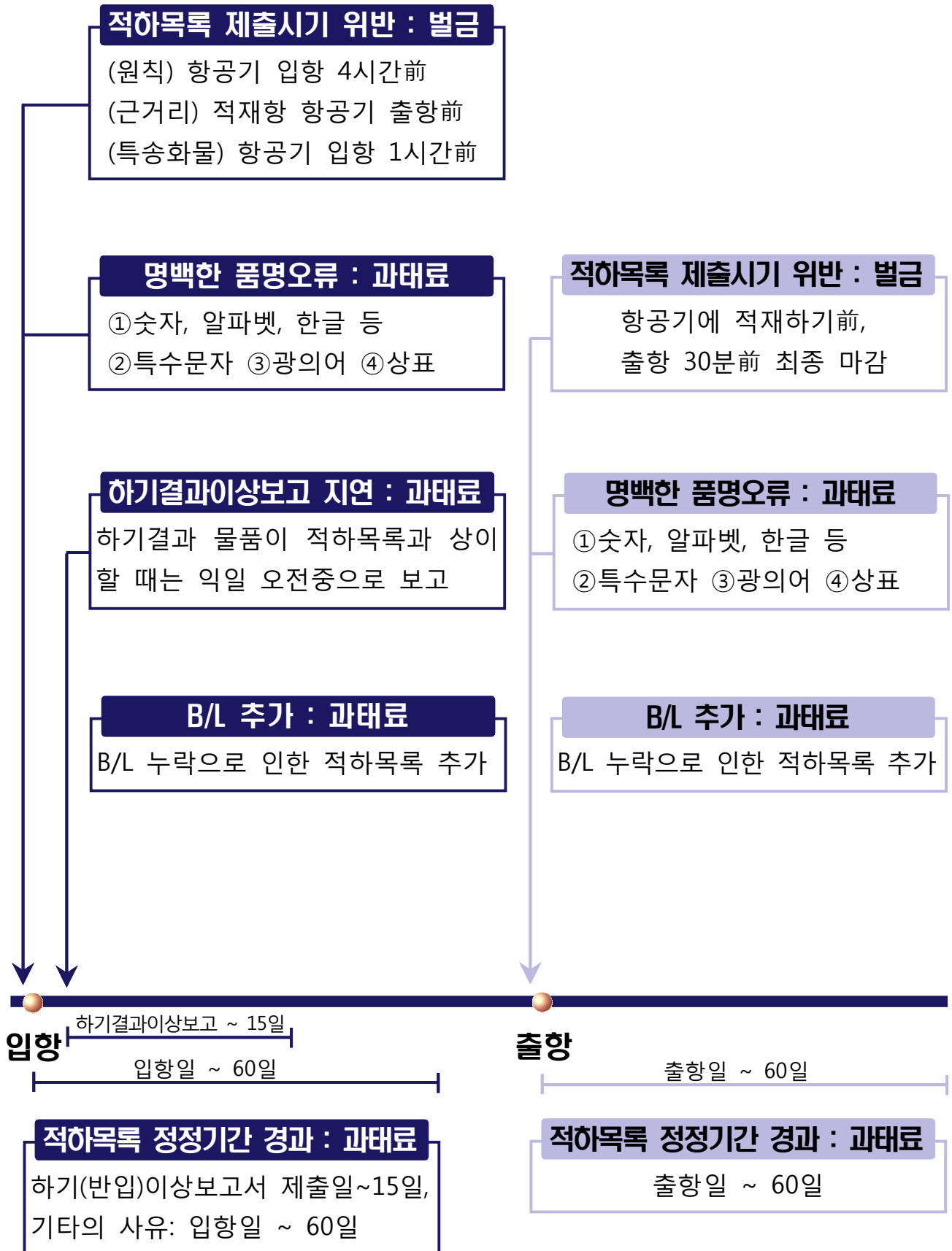
- ☐ 적하목록 제출율 90% 미만일 때는 MRN 단위로 1건 부과
- ☐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이 혼재된 경우, 각각 비율을 산출하여 과태료 부과
 - 항공사, 특송업체에 각각 부과될 경우 MRN 1건에 과태료 2건 부과

5 향후 과태료 부과 일정

- ☐ 수입 적하목록
 - 입항편별 적하목록 제출 및 누락건 조회기능 시스템 개선 ('13.4월 이후)
 - 구분②의 구간별 비율 및 적하목록 제출율 조회 기능 추가
 - 시스템 개선후 위반건수를 고려하여 분기별* 부과 검토
 - 2014년 이후부터 입항편별 적하목록 제출율 95% 미만, 과태료 부과 예정
- ☐ 수출 적하목록
 - '12. 12. 01. 출항 이후, 누락 B/L 정정 추가 제출건에 대해 부과
 - '12.12.01~'12.12.31 기간 중 누락 B/L 정정 추가분 '13.3월 중 부과
 - '13.1월 이후 출항건 '13.4월 이후 분기별 부과 예정

* 수입항공적하목록의 경우 ①정정의무기간 경과 및 ②하기결과이상보고 지연제출 과태료는 분기별로 부과중임

참고자료1 적하목록 관련 벌금 · 과태료 부과 요약



참고자료2 수출입적하목록 벌금·과태료 근거 규정

I 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위반한 자

☞ 제140조(물품의 하역)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135조제2항 ... 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35조(입항절차)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②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1-7조(적재신고) 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적재하기전 법 제14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I

적하목록 정정기간 경과, 명백한 품명오류, B/L추가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수입

제2-2-5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기결과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기타의 사유로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입항일부터 **60일 이내**

수출

제3-2-3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Ⅲ

하기결과이상보고 제출기간 경과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9조제4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2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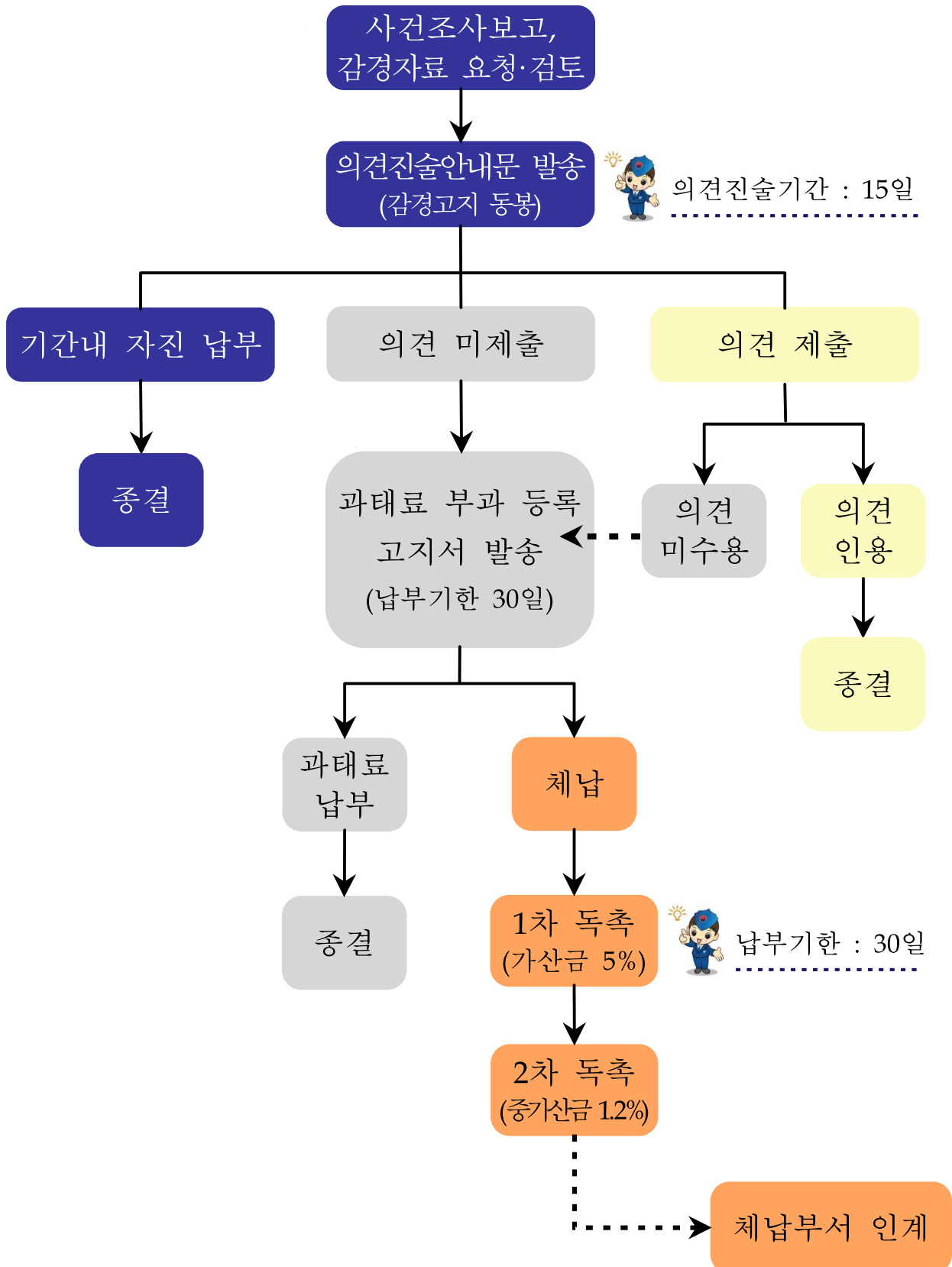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법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2-8조(하기결과보고) ① 항공사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기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1조제3항에 따른 추가 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하기작업으로 당일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3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시행세칙 정리

□ 과태료 부과 절차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과기준) ①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따른 위반내용별 과태료는 [별표1]내지 [별표4]까지의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사유 부호"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를 확인하고 차수별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다.

제6조(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세관장은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세관장은 법 제2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AEO 등급에 따라 등급이 A인 경우 100분의 20을, 등급이 AA인 경우 100분의 30을, 등급이 AAA인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밀수방지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감경기간은 표창수여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3. 세관장이 질서위반행위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자의 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감경은 가중부과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경할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부과기준에 감경률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의견진술) ①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의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안내문(별지 제2호 또는 제2-2호 서식)**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자진납부자의 처리) ① 세관장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8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되 세관장이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부과 예정금액에 제8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

제12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별지 제7호또는 제7-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시효, 제척기간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세법」에 의한 관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와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시행세칙상 과태료 감경 범위

구분	세부내역	감경률	인정범위
자진납부	의견진술기간(15일)내 자진납부	20%	20%
AEO 공인업체	A 등급	20%	최대 50%
	AA 등급	30%	
	AAA 등급	50%	
기타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3. 세관장이 질서위반행위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 과태료 감경은 가중부과(2,3구간)인 경우, 적용을 배제함(자진납부 20%는 가능)

※ 회사 고유 업무수행으로 관세행정 공적이 인정되어 임·직원 명의로 받은 표창 가능

※ 감경을 적용된 과태료(최대50%)에서 자진납부(20%) 적용시, 최대 60% 감경 가능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3]

[13.1.1 법 개정으로 () 항으로 변경됨]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제277조 제3항(4항) 제5호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최근 1년간 10회 이하)	100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200 (최근 1년간 20회 초과)
제277조 제4항(5항) 제1호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1. 제27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3.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①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별도시행)	① 1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3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 이하)	5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②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③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	② B/L기준 0.1% 이내 위반	B/L기준 0.1%+50건 이내	B/L기준 0.1%+50건 초과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	①위반횟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일자별·행위자별·모선(기)별로 10건 이하는 1건으로 처리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17(2013.02.20) 「항공 수입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기준 시달」

적용대상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항공수입 화물 (입항편별 적하목록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부과)	①	10만원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이하)	30만원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초과 100건이내)	50만원 (최근 1년간 MRN기준 100건초과)
	②	최근 1년간 MRN기준 2%이내 위반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이내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초과
- ①위반횟수 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 부과방식중 택일 가능				

※ 항공 수입화물의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에 대한 과태료는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 개선안을 적용함.